

# 제41기 의안설명서

## 제1호 의안

제417(2024.01.01~2024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안내용: 상법 제44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41기 재무제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.

##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| 현행  | 개정안   | 비고  |
|---|---|---|
| <p><b>제 44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, 비치 등)</b><br/>①~④ (생략)<br/>⑤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<br/>2.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총괄CEO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영업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총괄CEO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<b>제 44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, 비치 등)</b><br/>①~④ (현행과 동일)<br/>⑤ (삭제)</p> <p>⑥ (삭제)</p>   | <p>주주가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하도록 정관 내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특칙 내용을 삭제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</p> |
| <p><b>제 48 조의2(분기배당)</b><br/>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3월,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  | <p><b>제 48 조의2(분기배당)</b><br/>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, 6월 및 9월 말일부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⑤ (현행과 동일)</p> | <p>분기배당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과 그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</p>               |
|   | <p>부칙(15)<br/>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  | <p>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</p>  |

## 제3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제3-1호 의안: 기타비상무이사 이효율

제3-2호 의안: 사외이사 한찬식

제3-3호 의안: 사외이사 이지운

제3-4호 의안: 사외이사 신미현

| 구분          | 성명  | 출생년도<br>추천인                 | 주요 약력  | 최대주주<br>와의 관계 | 체납사실<br>여부            | 부실기업<br>경영진 여부 | 법령상<br>결격 사유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기타<br>비상무이사 | 이효율 | 1957<br>이사회                 | 2017~2024 (주)풀무원 총괄CEO 대표이사<br>2019~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<br>2024~현재 (주)풀무원 이사회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| 계열회사<br>(풀무원)<br>등기임원 | 없음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
| 사외이사        | 한찬식 | 1968<br>사외이사<br>후보추천<br>위원회 | 2018~20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<br>2022~현재 김·장법률사무소 변호사<br>2022~현재 (주)풀무원 사외이사<br>2023~현재 HD현대일렉트릭(주) 사외이사 | 없음            | 계열회사<br>(풀무원)<br>등기임원 | 없음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
| 사외이사        | 이지운 | 1965<br>사외이사<br>후보추천<br>위원회 | 2016~2019 서울시설공단 이사장<br>2020~2022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<br>2021~현재 플레시먼힐러드 상임고문<br>2022~현재 (주)풀무원 사외이사      | 없음            | 계열회사<br>(풀무원)<br>등기임원 | 없음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
| 사외이사        | 신미현 | 1969<br>사외이사<br>후보추천<br>위원회 | 2016~현재 듀폰코리아 HR LEADER  | 없음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

## 제4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

| 구분   | 성명  | 출생년도<br>추천인                 | 주요 약력  | 최대주주<br>와의 관계 | 체납사실<br>여부            | 부실기업<br>경영진 여부 | 법령상<br>결격 사유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외이사 | 김우진 | 1970<br>사외이사<br>후보추천<br>위원회 | 2018~현재 서울대 경영(전문)대학(원) 교수<br>2020~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<br>2022~현재 (주)풀무원 사외이사<br>2024~현재 (주)태광산업 사외이사 | 없음            | 계열회사<br>(풀무원)<br>등기임원 | 없음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

# 제41기 의안설명서

## 제5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| 구분   | 성명  | 출생년도<br>추천인 | 주요 약력   | 최대주주<br>와의 관계 | 체납사실<br>여부            | 부실기업<br>경영진 여부 | 법령상<br>결격 사유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외이사 | 한찬식 | 1968        | 2018~20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| 계열회사<br>(풀무원)<br>등기임원 | 없음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
|      |     | 사외이사        | 2022~현재 김·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|     | 후보추천<br>위원회 | 2022~현재 (주)풀무원 사외이사<br>2023~현재 HD현대일렉트릭(주) 사외이사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 제6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| 구분            | 당 기(제42기, 2025년) | 전 기(제41기, 2024년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이사의 수(사외이사 수) | 11명(8명)          | 11명(8명)         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4,500백만원         | 4,500백만원         |
|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| -                | 3,114백만원         |

\* 상기 보수한도 및 보수총액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하였습니다.

\* 해당기간 중 중도 퇴임 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.